

정 정 신 고 (보고)

2022년 3월 3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4년 2월 3일

3. 정정사유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 변경 반영
- 법,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 10. 21 시행)

4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2부. 5. 운용전문 인력	정기갱신	-	작성기준일 업데이트(운용 중인 다른집합투자기구수, 다른운용 자산규모)
제2부. 10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 변경 반영	-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이 33.81%이므로 6개의 투자 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, 보수적으로 투자자 보호 필요성,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분류합니다.	-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이 34.63%이므로 6개의 투자 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, 보수적으로 투자자 보호 필요성,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분류합니다.
제2부. 12. 가. 기준 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	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 10. 21 시행)	----- 공고·게시 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 에 계상된 투자신탁----- ----	----- 공고·게시 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 에 계상된 투자신탁----- ----
제2부. 13.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※ 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반영에 따른 현황 업데이트

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			
제3부.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
제4부. 1.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
제 5 부. 3. 가. (1) 2) 결산서류	법 개정사항 반영 (2021. 10. 21 시행)	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 (이하 “결산서류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 1. <u>대차대조표</u> 2. ~ 3. (생략)	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 (이하 “결산서류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 1. <u>재무상태표</u> 2. ~ 3. (현행과 같음)
제 5 부. 3. 가. (2) 자산운용보고서	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 10. 21 시행)	-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 1. ~ 8. (생략) 9. <u>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(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)</u> 10. ~ 11. (생략) 12. <u>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</u> (신설) 13. (생략)	-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<u>투자신탁의 투자전략</u> 10. ~ 11. (현행과 같음) 12. <u>투자신탁의 유동성 위험</u> 12의2. <u>투자신탁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</u> 13. (현행과 같음)
제 5 부. 3. 나. (2)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(2021. 10. 21 시행)	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	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

		<p>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신설</u>)</p> <p>3. ~ 11. (생략)</p>	<p>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 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</p> <p>3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
제5부.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반영에 따른 현황 업데이트